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가경정 제2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99,049,570	71,971,487
일반회계	1,819,868,166	54,596,045
특별회계	579,181,404	17,375,442
공기업특별회계	347,828,648	10,434,859
상수도사업	99,894,129	2,996,824
하수도사업	247,934,519	7,438,036
기타특별회계	231,352,756	6,940,583
공유재산관리	59,186,219	1,775,587
의료급여기금	8,733,831	262,0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2,204,000	66,1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11,394	21,342
교통사업	75,472,539	2,264,176
철도건설사업	11,174,844	335,245
폐기물처리시설	5,595,100	167,853
도시재정비촉진	1,316,760	39,503
도시개발	22,226,400	666,792
기반시설 설치	4,000,000	120,000
문화시설건립	12,008,369	360,251
도시재생	28,723,300	861,69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16,979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30,309,282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734,984천원
- (3) 내부유보금 672,713천원

제 7 조 202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